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30403
등록일자	2015.12.29.
결재일자	2015.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이경심	김회동	송필석	전결 12/30 김용운		
협조자					



2015 하반기 체납징수 Focus plan⑧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추진개요

- 지방세 3회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중 우리구에서 인허가한 사업 대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납부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납 및 일부납부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로 조세징의를 실현 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구청장방침(2015.1.23.)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 계획』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계획(세무관리과-23701)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추진계획

- 추진대상 : 10월 예고문 발송후 미납자 (예고후 1,341건 2,843백만원 징수)

체납자	제한대상	체납건수	체납액	비고
714명	714건	11,060건	5,894백만원	12.11까지 미납

- ▶ 허가기관 : 우리구 11개부서 ▶ 면허종류 : 통신판매업 외57종

-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문 발송 : 2015. 12. 30.(수)

2015. 12. 29.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세무관리과-1791, 2015.1.2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5년 세입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우리구에서 인허가 받은 사업 대상자중 지방세 3회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하고 납부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완납 및 일부납 부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해당 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 하여 조세정의 실현

1 추진근거

- 구청장방침(2015.1.23.)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 계획』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계획(세무관리과-23701)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황

- 체납현황 (2015.11월말 수납후)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체 납 건 수	체 납 액	비 율 (체 납 액)
계	11,060	5,894	100
과년도	7,257	3,576	60.68
현년도	3,803	2,318	39.32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현황

(2015.11.30.수납기준)

체 납 자	제 한 대 상	체 납 건 수	체 납 액	비 고
714명	714건	11,060건	5,894백만원	

○ 허가부서별 현황 (우리구 11개부서)

(단위: 건,원)

구분	허가기관	대표 면허종호명	제한대상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714	11,060	5,894,459,330
1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302	4,741	1,586,920,040
2	보건소 위생과	식품접객업	131	1,965	2,438,948,430
3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출판업, 여행업	117	1,944	671,458,460
4	도시환경국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45	615	582,671,350
5	교통안전국 건설관리과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47	593	339,991,670
6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46	765	150,404,600
7	교통안전국 자동차민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	138	15,525,810
8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업	8	120	26,385,720
9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중개사무소개설	9	112	25,164,390
10	도시환경국 환경과	고압가스제조업	4	58	46,728,110
11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업	1	9	10,260,750

▶ 관내 허가기관 : 714명 (면허 제한대상 714건, 체납 11,060건, 5,894백만원)

○ 면허종류별 현황 (면허 58종)

(단위: 건,백만원)

구분	면허종류	제한대상	체납금액	구분	면허종류	제한대상	체납금액
계		714	5,894	6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9	161
1위	통신판매업	244	1,307	7위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또는 게임제작업	29	75
2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60	332	8위	출판업	20	92
3위	건축사사무소개설	46	150	9위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	17	61
4위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34	280	10위	영화업	23	118
5위	방문판매업	30	82	기타	그 외 48종	182	3,236

3 추진사항

- ▶ 진입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허가 등을 제한
- ▶ 사업퇴출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후 징수액 : **1,341건 2,843백만원**
 - ※ 10월 예고대상자 935명 중 207명의 10.20.~12.11.수납액 (10월이후 부과분 수납은 제외)
- 추진대상 :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우리구에서 인·허가한 사업자
- 추진건수 : **714명 (면허 714건, 체납 5,894백만원)**
 - ※ 10월 예고대상자 935명중 12월11까지 수납자, 회생증인자, 수탁자등을 제외
- 추진일정
 - 2015. 12. 30. 관허사업 제한 요구

4 행정사항

- 인허가 부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건인 3회이상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인 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함으로 관허사업 제한시 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관리과에 확인후 시행
- 인허가 부서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상자중 사업자 등록증등을 기 반납하고 사업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허가사항이 있는 경우는 허가취소 하고 세무관리과 및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에게 통보
- 세무2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담당은 허가취소 통보시 대장 정리 철저

- 붙임. 1.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상자 내역 1부
2. 10월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 수납내역 1부 끝.